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81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보험진료수를 확인·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,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로 하고,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4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조정 및 정산 등)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내역이 법 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조정결과를 알려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.

제6조의5(중전의 제6조의4)제1항 중 “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”를 “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”를 “그 결과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의6(중전의 제6조의5) 중 “제6조의4”를 “제6조의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4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조정 및 정산 등) 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내역이 법 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조정결과를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.</u>
<u>제6조의4(이의제기 등)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</u>	<u>제6조의5(이의제기 등) ① -----</u> <u>-----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-----</u>

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 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 은 <u>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 항에 따라</u> 지급된 자동차보험진 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. <u>제6조의5</u>(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 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) 제6조 의2부터 <u>제6조의4</u>까지의 규정 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, 심사,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u>제6조의6</u> (생 략)	-----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 <u>그 결과에 따라</u> ----- ----- -. <u>제6조의6</u>(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 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) ---- ----- <u>제6조의5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6조의7</u> (현행 제6조의6과 같음)
--	---